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방법(표시 위치) 명확화 (안 별표 3제2호가목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“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·위·아래”마다 표시하도록 하여 동일 내용을 반복 표기해야 하는 애로사항 발생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전자매체에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“첫 화면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·위·아래에” 표시하도록 개선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별도의 창 위치를 첫 화면에 표시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 가독성 향상 및 동일 내용을 반복 표기하는 규제 완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식품접객업의 원산지 공통적 표시 방법 예시 변경 및 추가(안 별표 4제1호다목 및 바목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공통적 원산지 표시 방법에 부합하는 예시로 변경 및 추가

나. 제·개정 내용

- “설령탕(육수: 국내산 한우)” 예시를 “설령탕(우사골: 국내산 한우)”로 변경하고 “오코노미야끼(가쓰오부시(가다랑어: 인도네시아산))”을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신규 예시를 추가하여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 향상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영업소 내의 전자매체를 통한 원산지표시 기준 마련 (안 별표 4제2호가목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식품접객업의 판매 방식이 다변화됨에 따라 전자메뉴판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 명확화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전자매체(태블릿 pc 등) 형태로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를 별도의 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독성 향상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4. 식품접객업의 원산지 표시 방법 적용 대상품목 현행화 (안 별표 4제3호마목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원산지표시법 시행령」 개정('22.12.30.)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방법 적용 대상품목 현행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원산지 표시 방법 적용 대상 수산물 기존 15개 품목(넙치, 참돔 등)에서 20개 품목(가리비, 우렁챙이, 전복, 방어 및 부세)으로 대상품목 현행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규정 일원화로 혼란을 방지하고 집행 효율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